

# 環境保全法

〔1977年12月31日〕  
法律 第3078號

改正 1979. 12. 28 法3213號 1981. 12. 31 法3505號  
1982. 12. 31 法3642號 1986. 12. 31 法3903號

第1章	總 則	.....	(1條~13條)
第2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	.....	(14~25)
第3章	大氣保全	.....	(26~32)
第4章	騒音·振動 등 規制	.....	(32의2~35)
第5章	水質 및 土壤의 保全	.....	(36~42의3)
第6章	費用負擔	.....	(43~46)
第7章	防止施設業	.....	(47~49의2)
第8章	削 除	<86. 12. 31>	
第9章	紛爭調停 및 被害賠償	.....	(53~60)
第10章	補 則	.....	(60의2~65)
第11章	罰 則	.....	(66~70)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環境汚染으로 인한 危害을 豫防하고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適正하게 管理保全함으로써 現在와 將來의 모든 國民이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1. 12. 31>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6. 12. 31>

1. “環境”이라 함은 自然의 狀態인 自然環境과 사람의 日常生活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財産의 보호 및 動植物의 生育에 필요한 生活環境을 말한다.
2. “汚染物質”이라 함은 大氣汚染·水質汚染 또는 土壤汚染의 要因이 되는 物質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스”라 함은 物質의 燃焼·合成·分解時 또는 物理的 性質에 의하여 發生하는 氣體物質을 말한다.
4. “粒子狀物質”이라 함은 物質의 破

碎·選別·堆積·移積 기타 機械의 處理 또는 燃焼·合成·分解時 發生하는 固體狀이나 液體狀의 微細한 物質로서 粉塵·煤煙·검댕 및 液滴 등을 말한다.

5. “粉塵”이라 함은 大氣 중에 떠다 니거나 흩날려 내러오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6. “煤煙”이라 함은 燃焼時 發生하는 遊離炭素를 주로 하는 微細한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新設 81. 12. 31>
7. “검댕”이라 함은 燃焼時 發生하는 遊離炭素가 凝結하여 粒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인 되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新設 81. 12. 31>
8. “惡臭”라 함은 黃化水素·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刺戟性 있는 氣體性物質이 사람의 嗅覺을 刺戟하여 不快感과 嫌惡感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9. “廢水”라 함은 물에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廢棄物이 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0. “騒音”이라 함은 機械·器具 등에서 發生하는 강한 音を 말한다.

11. “振動”이라 함은 機械·器具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12. “排出施設”이라 함은 大氣, 水質, 土壤을 汚染하거나 騒音, 振動, 惡臭 등으로 國民의 健康과 生活環境에 被害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汚染物質 등을 排出하는 施設物·機械·器具 기타 物體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特定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健康·財産이나 農水産物 등의 生育에 직접 또는 間接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物體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防止施設”이라 함은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 또는 騒音·振動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新設 81. 12. 31〉
15. “合成化學物質”이라 함은 元素 또는 化合物의 化學反應에 의하여 생성되는 化合物을 말한다.

**第3條** [通用排除] 이 法의 規定은 原子力法에서 장하는 放射性物質에 의한 環境汚染 및 그 防止에 關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條** [環境基準] ①環境廳長은 快適한 環境을 保全하고 環境汚染으로부터 사람의 健康을 보호함에 필요한 環境基準을 設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設定項目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86. 12. 31〉

③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環境廳長의 承認을 얻어 第1項의 基準에 불구하고 別途의 環境基準(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 設定할 수 있다.

**第4條의2** [環境基準의 維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 適切히 維持되도록 環境에 關連되는 法令의 制定과 行政計劃의 樹立 및 事業의 執行에 있어서 다음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環境條件惡化의 豫防 및 그 要因의 제거
2. 環境汚染地域의 原狀回復
3. 새로운 科學技術의 사용으로 인한 環境危害의 事前豫防
4.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財源의 適正配分〈本條新設 81. 12. 31〉

**第5條** [環境影響評價書작성] ①都市의 開發, 産業立地 및 工業團地의 造成, 에너지開發, 港灣建設, 道路建設, 水資源開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環境保全에 影響을 미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計劃案과 그 計劃事業의 실시로 環境에 미치게 될 影響의 豫測 및 評價에 關한 書類(이하 “環境影響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環境廳長에게 協議를 요청하여야 한다.〈改正 79. 12. 28, 81. 12. 31, 86. 12. 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評價書를 작성하여야 할 事業의 구체적인 범위, 協議要請時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86. 12. 31〉

③環境廳長은 第1項의 環境影響評價를 위하여 필요한 研究·技術開發·要員養成 등의 措置를 하고 國內外的 關聯情報 및 資料를 蒐集·保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國民에게 公表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新設 81. 12. 31〉

**第5條의2** [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및 의견제시] ①環境廳長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環境影響評價書를 檢討한 후 그 事業이 環境保全에 현저한 支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別途의 調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諮問을 받아 그 事業計劃을 主管하는 者에게

事業計劃의 調整 및 補完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廳長의 요청을 받은 者는 이에 상응할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環境廳長은 環境影響評價書를 檢討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計劃 樹立者에 대하여 關聯資料 및 의견 등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86.12.31>

第5條의3 [環境影響評價의 代行]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는 者는 그 計劃事業에 관한 環境影響評價를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이 指定·公告하는 國·公立研究機關, 政府出捐研究機關 등 環境影響評價能力이 있는 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86.12.31>

<本條新設 81.12.31>

第6條 [常時測定] ①環境廳長은 全國의 環境汚染의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環境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は 당해 管轄區域 내의 環境汚染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環境汚染度를 測定할 수 있다.

第6條의2 [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環境廳長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범위 및 區域 등을 明示한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은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官報”는 “市·道公報”로 본다.

<本條新設 81.12.31>

第6條의3 [土地 등의 收用 및 사용]

①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は 第6條

의 2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設置計劃에 따라 測定網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損失補償 등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本條新設 81.12.31>

第6條의4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가 第6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の 許可
2.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の 許可
3.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用 또는 사용의 許可

②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は 第6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 設置計劃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決定·告示전에 미리 關係機關과 協議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1.12.31>

第7條 [特別對策地區] ①環境廳長

은 環境의 汚染 또는 自然生態界의 變化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地域을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指定하고 管轄市·道知事に 대하여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樹立하여 이를 施行할 것을 指示할 수 있다.<改正 81.12.31>

②市·道知事は 第1項의 指示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地域 내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樹立하여 環境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8條 [特別對策地域 내의 土地이용 등의 制限] 環境廳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 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地域內的의 土地이용과 施設設置를 制限할 수 있다. <改正 79. 12. 28>

**第9條** [自然環境의 保全] ①環境廳長은 自然環境의 保全을 위하여 生物의 生育環境 또는 自然生態界에 대한 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②環境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 特別히 保全하여야 할 需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自然環境保全地域으로 指定할 것을 建設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改正 82. 12. 31>

③環境廳長은 自然環境保全地域 안에서 自然生態界의 保全이 特別히 필요한 地域을 自然生態界保全區域으로 指定하고, 自然生態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關係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指定의 對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改 81. 12. 31>

**第9條의2** [野生動物·植物의 보호]

①環境廳長은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水産業法·山林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爬蟲類·兩棲類·昆蟲類 등 動物類와 植物類(이하 “未保護 野生動物·植物”이라 한다)로서 그 보전이 危殆롭게 되었을 때에는 自然生態界의 均衡유지와 이들의 滅種防止를 위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未保護 野生動物·植物 중 環境廳長이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告示하는 動物·植物(이하 “特定 野生動物·植物”이라 한다)은 採取·捕獲·移植·輸出·加工·보관하지 못한다. 다만,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許可·승인 등을 받은 경우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環境廳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環境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한 特定 野生動物·植物이 棲息하는 地域의 전부 또는 일부를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特定 野生動物·植物保護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는 特別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特定 野生動物·植物保護區域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環境廳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環境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 野生動物·植物保護區域 안의 特定 野生動物·植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未保護 野生動物·植物 중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物·植物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에 의하여 去來가 規制되는 動物·植物類 또는 이를 이용한 加工品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本條新設 86. 12. 31>

**第10條** [環境保全委員會] ①環境保全에 관한 基本計劃과 綜合政策 등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環境保全委員會를 둔다.

②環境保全委員會의 構成·機能·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環境保全諮問委員會] ①環境保全에 필요한 技術的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廳長 所屬下에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市·道知事所屬下에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각각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構成·機能·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環境研究機關의 設置] 政府는 環境保全에 필요한 試驗·調査·研究·技術開發·資料分析 및 要員의 訓

練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研究機關을 設置한다.

**第13條** 【大氣 및 水質의 影響圈別管理】 環境廳長은 環境汚染에 관한 狀況을 把握하고 그 防止對策을 講究하기 위하여 行政管轄區域에 불구하고 大氣汚染의 影響圈地域 또는 水質汚染의 水系別水域을 管理할 수 있다.

## 第2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

**第14條** 【排出許容基準】 ①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과 惡臭 및 機械·器具 등에서 발생하는 騒音·振動의 排出許容基準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86. 12. 31>

② 環境廳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特別對策地域에 대하여 環境汚染防止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基準보다 嚴格한 排出許容基準을 定할 수 있다.

③ 環境廳長은 第2項의 排出許容基準에 불구하고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을 維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特別對策地域內에 새로이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 特別 排出許容基準을 定할 수 있다.

**第15條**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제한 등】 ①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를 받은 사항 중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며, 그외의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③ 環境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 등으로 인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변 環境에 현저히 有害한 영향을 미칠

우리가 있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에 있어서의 大統領令이 定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는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全改 86. 12. 31>

**第15條의2** 【防止施設의 設置】 ① 排出施設의 設置許可(變更許可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排出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는 排出되는 汚染物質 등을 第14條의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하기 위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防止施設設置의 방법으로 汚染物質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경우 또는 第15條의 4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그 排出施設의 機能 및 工程上 汚染物質 등이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排出되는 것으로 環境廳長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防止施設의 設置(變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設計·施工하여야 한다. 다만,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어 事業者 스스로 防止施設을 設計·施工하고자 하는 경우와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일부 또는 경미한 사항의 防止施設을 變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86. 12. 31>

**第15條의3** 【共同防止施設】 ① 工業團地 기타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는 環境廳長의 承認을 얻어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 등의 共同처리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各事業者는 事業場別로 당해 汚染物質 등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② 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 排出施設管理人的 任命 기타 共同防止施設의 設置·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81. 12. 31>

**第15條의4** 【環境技術監理團】 ①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設置에 따르는 技術檢討 및 防止施設의 運營指導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環境廳에 環境技術監理團을 둔다.

②環境技術監理團의 構成·業務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81. 12. 31〉

**第16條** 【使用開始의 申告】 ①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을 設置完了한 때에는 設置完了한 날로부터 15日 내에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에게 申告하고 指定한 期日內에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81. 12. 31〉

②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適合判定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施設을 利用하여 操業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의2**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常運營】 ①事業者는 操業行爲를 할 때에는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 등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도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여야 한다.

②環境廳長은 事業者에 대하여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常運營與否를 확인할 수 있는 器機의 附着 등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本條新設 81. 12. 31〉

**第17條** 【改善命令 등】 環境廳長은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適合判定을 받아 操業 중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 또는 騒音·振動의 정도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당해 事業者에게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改善·代替 기타 필요한 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命할 수 있다. 〈改正 81.

12. 31, 86. 12. 31〉

**第18條** 【操業停止 등】 ①環境廳長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期間내에 改善하였으나 檢査결과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の 操業 정지를 命할 수 있다.

②環境廳長은 大氣汚染·水質汚染·騒音·振動 등으로 인한 國民保健上의 危害와 生活環境의 被害가 急迫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制限·操業정지·기타 필요한 措置를 즉시 命할 수 있다.

**第19條** 【施設의 移轉命令 등】 ①環境廳長은 工場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 改善命令을 하여도 당해 事業場의 位置에서는 이를 履行할 수 없다고 判斷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該 事業場의 移轉을 命할 수 있다. 〈改正 81. 12. 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轉하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減稅 또는 免稅할 수 있다.

**第19條의2** 【排出賦課金】 ①環境廳長은 事業者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汚染物質 등을 排出하면서 操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排出한 汚染物質 處理費用에 상당한 排出賦課金を 납부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86. 12. 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은 第62條의 2의 環境汚染防止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③排出賦課金은 排出許容基準의 超過率

· 排出期間·汚染物質 등의 種別 및 發生量에 따라 算定하되, 그 算定基準·納入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排出賦課金の 徵收 및 滯納處分에 관하여는 國稅徵收法의 例에 의한다.

<本條新設 81. 12. 31>

**第20條** [許可의 取消] 環境廳長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81. 12. 31>

1.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때

**第21條**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 등] 環境廳長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排出施設의 操業정지 또는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第22條** [自家測定] ①事業者가 그 排出施設을 사용할 때에는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自家測定하거나 環境廳長이 自家測定業務를 代行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者(이하 “測定代行者”라 한다)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고 그 記錄을 備置하여야 한다.<改正 79. 12. 28, 81. 12. 31, 86. 12. 31>

②自家測定の 대상·項目·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改正 79. 12. 28, 86. 12. 31>

**第22條의2** [測定代行者의 지정] ①測定代行者의 指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을 갖추어야 한다.

②環境廳長은 測定代行業務의 적정성, 排出施設의 地域의 분포 또는 測定代行業務의 수요를 고려하여 測定代行者의 數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環境廳長은 測定代行者가 보유하고 있는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測定代行者가 測定할 수 있는 排出施設의 規模, 區域 또는 測定項目 등을 제한할 수 있

다.

④測定代行者는 測定代行情 結果를 기록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은 測定代行者의 指정의 缺格事由 및 그 指정의 取消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⑥測定代行者의 준수사항·測定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86. 12. 31>

**第22條의3** [環境汚染公定試驗法] 環境廳長은 汚染物質 등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の 正確 및 統一을 維持하기 위하여 環境汚染公定試驗法을 定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1. 12. 31>

**第23條** [排出施設管理人] ①事業者는 그 排出施設의 種類와 機能에 따라 排出施設管理人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81. 12. 31>

②事業者는 排出施設管理人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排出施設의 管理狀況을 監督하여야 하며, 排出施設管理人이 그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常稼働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하는 때에는 定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86. 12. 31>

③排出施設管理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 및 資格基準·管理內容·遵守事項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23條2** [排出施設管理人의 變更命令] 環境廳長은 排出施設管理人이 排出施設의 管理를 소홀히 하거나 遵守事項違反 기타 違法行爲를 한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排出施設管理人을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있다.<本條新設 81. 12. 31>

**第24條** [報告 및 檢査 등] ①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5條 [環境監視員] ①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 公務員의 職務의 기타 環境에 관한 監視業務를 하기 위하여 環境廳과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環境監視員을 둔다. <改正 81.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監視員의 任免·職務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3章 大氣保全

第26條 [大氣汚染의 規制] ①環境廳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 中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區域에 있어서 各 事業場으로부터 大氣 中에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 環境基準을 초과하여 住民의 健康과 生物의 生育 및 財産에 重大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區域내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基準·項目 기타 필요한 事項은 環境廳長이 정한다.

第26條의2 [飛散粉塵의 規制] ①粉塵 中 일정한 排出口없이 大氣 中에 직접 排出되는 粉塵(이하 “飛散粉塵”이라 한다)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環境廳長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環境廳長이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정하는 飛散粉塵을 발생시키는 事業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廳長이 정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飛散粉塵의 발생을 抑制하는 데 필요한 施設을 設置하거나 措置

를 하여야 한다.

②環境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나 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施設이나 措置가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事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施設의 設置나 措置의 이행 또는 개선을 命할 수 있다.

③環境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事業의 증지 또는 施設 등의 사용증지나 사용제한을 命할 수 있다. <本條新設 86.12.31>

第27條 [燃料사용에 관한 措置] 環境廳長은 大氣汚染을 防止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場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燃料의 사용을 制限하거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27條의2 [燃料用油類의 硫黃含有基準] ①環境廳長은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燃料用 油類의 種類別로 硫黃의 含有基準을 定할 수 있다.

②環境廳長은 油類의 硫黃含有量이 第1項의 基準을 초과한 때에는 그 油類의 製造業者·販賣業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그 油類의 生産·販賣 및 사용을 制限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本條新設 79.12.28>

第28條 [自動車 및 重機排出가스의 許容基準] ①環境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自動車 및 重機(이하 “自動車”라 한다)로부터 大氣中에 排出되는 가스·煤煙 등의 排出許容基準을 自動車種類別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容基準의 범위내에서 自動車 排出가스의 規制에 관하여 필요한 細部事項은 交通部長官 또는 建設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廳長이 정한다. <改正 79.12.28>

第29條 [自動車の 사용 또는 通行統制] ①環境廳長은 自動車로부터 排出되



는 가스·煤煙 등이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煤煙·가스 등의 發散防止裝置의 整備, 代替 또는 自動車 사용의 禁止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것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は 自動車로부터 排出되는 가스가 사람의 健康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定한 地域의 自動車 通行을 統制할 수 있다. <改正 79. 12. 28>

第30條 【自動車製作에 있어서의 排出濃度】 ①自動車を 製作하는 者は 그 自動車の 排出가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排出가스 濃度基準에 적합하도록 製作하여야 하며, 그가 製作한 自動車の 標本에 대하여 排出가스 濃度基準에의 적합성에 관한 試驗檢査를 하고 그 結果를 環境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自動車を 輸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86. 12. 31>

②環境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試驗檢査結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關係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確認檢査 또는 試驗施設의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新設 86. 12. 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新設 86. 12. 31>

④自動車排出가스裝置의 性能아 環境廳長이 정하는 一定期間 동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가스 濃度基準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 環境廳長은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自動車製作者 또는 輸入者에 대하여 당해 自動車에 대한 缺陷의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新設 86. 12. 31>

⑤第1項 및 第2項의 自動車排出가스

濃度基準에의 適合與否에 관한 檢査方法 및 節次는 環境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新設 81. 12. 31, 改正 86. 12. 31>

第31條 【自動車燃料用添加劑의 規制】

①環境廳長은 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의 添加劑로 인하여 環境保全上 危害하거나 人體에 현저하게 有害한 物質이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添加劑의 製造·輸入 또는 사용을 規制할 수 있다.

②自動車燃料用添加劑를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나 添加劑를 사용하여 自動車燃料를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添加劑의 종류 및 性狀添加劑의 사용목적 등을 미리 環境廳長에게 申告하여 添加劑로 인한 有害性 등에 관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石油精製業者가 申告한 添加劑에 대한 審査에 있어서는 미리 動力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環境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自動車燃料用添加劑의 製造·輸入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그 製造·輸入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添加劑의 製造 또는 사용장소 등에 출입하여 關係書類를 확인하게 하거나 필요한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확인 또는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改 86. 12. 31>

第32條 【惡臭發生物의 燒却금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地域내에서는 누구든지 적합한 燒却施設이 없이는 고무·皮革·合成樹脂 또는 廢油 등 惡臭가 발생하는 物質을 燒却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4章 騒音·振動 등 規制

第32條의2 【生活騒音의 제한】 環境廳

長은 住居生活의 靜穩을 보호하기 위하여 深夜에 있어서의 騒音이나 擴聲器 등에 의한 騒音에 관한 生活騒音規制基準을 정하고 그 基準에 따라 騒音을 제한할 수 있다.

<本條新設 81.12.31>

**第32條의3** [交通騒音防止施設 등] 環境廳長은 自動車專用道路·高速道路 및 鐵道로부터 발생되는 騒音으로 인하여 住居生活의 靜穩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에게 交通騒音防止施設의 設置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全改 86.12.31>

**第32條의4** [自動車騒音基準] 自動車를 製作 또는 運行하는 者는 環境廳長이 商工部長官 및 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自動車 騒音許容基準에 적합하도록 製作 또는 運行하여야 한다. 輸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本條新設 81.12.31>

**第33條** [規制地域의 指定] ①市·道知事は 住民의 生活環境을 保全하기 위하여 騒音(振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防止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騒音規制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騒音規制地域을 指定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거나 廢止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34條** [騒音規制基準] ①市·道知事は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騒音規制地域을 指定하는 때에는 環境廳長의 承認을 얻어 당해 地域 안의 騒音源에 대한 騒音規制基準을 정하여야 한다.<改正 86.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騒音規制基準을 設定하거나 變更 또는 廢止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4條의2** [自動車騒音의 제한 등] 市·道知事は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騒音規制地域 안을 通行하는 自動車

를 運行하는 者에 대하여 警音器의 사용금지, 속도의 제한, 迂廻 등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全改 86.12.31>

**第35條** [特定工事의 事前申告] ①第33條의 規定에 의한 騒音規制地域 내에서 特定工事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管轄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は 特定工事로 인한 騒音이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騒音의 規制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作業時間의 調整·防止施設의 設置 등을 命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工事의 種類·申告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 第5章 水質 및 土壤의 保全

**第36條** [水質汚染의 規制] ①環境廳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 중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區域에 있어서 각 事業場으로부터 公共水域에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을 초과하여 住民의 健康과 生物의 生育에 重大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區域내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基準·項目 기타 필요한 事項은 環境廳長이 정한다.<改正 79.12.28>

**第37條** [投棄 또는 毀損 등 行爲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事由없이 公共水域 또는 山林에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1. 特定有害物質 또는 産業廢棄物을 버리는 行爲
2. 動物의 死體·糞尿·塵芥 또는 汚泥 등을 버리는 行爲
3. 自然環境毀損 또는 自然環境保存

을 위한 施設物을 破損하는 行爲  
 ②環境廳長은 特定有害物質, 産業廢棄物, 動物의 死體, 糞尿 또는 塵芥 등의 汚染物質로 인하여 河川·公有水面 또는 山林이 汚染되거나 汚染될 虞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汚染物質의 占有者에게 그 除去를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汚染物質을 排出한 者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者에게 命하여야 한다. <新設 79.12.28, 改正 86.12.31>

**第38條** [公共水域의 占用 및 埋立 등에 의한 汚染防止] ①公共水域에 대한 占用 또는 埋立을 許可 또는 認可하고자 하는 主務官廳은 公共水域의 環境染으로 인한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함에 필요한 條件을 붙여야 한다. ②第1項의 條件·內容·危害防止方法 등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79.12.28>

**第39條** [下水終末處理場 등의 維持管理] 下水, 廢水 또는 糞尿終末處理場을 設置運營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放流水 水質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

**第40條** [公共施設 등의 整備指示] 環境廳長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道知事로 하여금 下水道·廢棄物處理施設 등의 設置·整備 등을 指示할 수 있다.

**第41條** [農耕地의 汚染防止] 市·道知事は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에 있어서 特定有害物質에 의한 農耕地(草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山林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農耕地 및 山林에 流入하는 用水의 水質基準을 정하거나 襲土·削土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86.12.31>

**第42條** [農水産物の 栽培制限] ①市·道知事は 特別對策地域내에 있어서 土壤 또는 水域이 特定有害物質에 의하여 汚染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土地

所有者 또는 栽培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汚染地域에 대한 農水産物 등의 栽培를 制限하거나 그 汚染地域에서 生産된 汚染된 農水産物을 廢棄할 수 있다. <改正 7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の 栽培制限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입은 損害에 대하여는 特定有害物質을 排出한 者가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

**第42條의2** [農藥殘留許容基準] ①環境廳長은 水質·土壤 또는 農作物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水質·土壤 또는 農作物 중 農藥殘留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②環境廳長은 水質·土壤 또는 農作物 중에 農藥殘留量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虞가 있는 農藥을 製造하는 者에 대하여는 製造의 금지·變更 또는 그 製品의 폐기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것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全改 81.12.31>

**第42條의3** [合成化學物質의 管理]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合成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性狀 및 安定性 등 審査에 필요한 資料를 첨부하여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環境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合成化學物質의 製造 또는 輸入者에 대하여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合成化學物質의 製造 또는 保管場所에 출입하여 關係書類를 확인하게 하거나 필요한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확인 또는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環境廳長은 國民保健 또는 環境에 有害하다고 판단되는 合成化學物質의 製造・輸入 및 流通의 금지 또는 制限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本條新設 86.12.31>

### 第 6 章 費用負擔

**第43條** 【環境汚染防止事業】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第62條의 3의 規定에 의한 環境汚染防止事業團(이하“施行者”라 한다)은 環境汚染이 深化되어 環境基準의 達成유지가 곤란하거나, 기타 環境保全上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環境汚染防止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 기타 汚染의 原因을 직접 惹起하게 한 者(이하“原因者”라 한다)는 事業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  
②施行者가 實施하는 環境汚染防止事業의 種類・規模・原因者의 費用負擔 기타 負擔에 關於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 領令으로 定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汚染防止事業의 일부를 第62條의 3의 規定에 의한 環境汚染防止事業團에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新設 81.12.31, 改正 86.12.31>

**第44條** 【原因者의 負擔金額】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因者의 負擔金(이하“負擔金”이라 한다)의 金額은 各 原因者에 대한 事業活動의 種類・規模 및 汚染物質의 排出程度 등을 基準으로 하여 負擔總額을 配分한 金額으로 한다.

**第45條** 【費用負擔計劃】 ①施行者가 環境汚染防止事業을 實施하고자 할 때 에는 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諮問을 받아 費用負擔計劃을 決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計劃의 樹立 및 決定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6條** 【強制徵收】 ①原因者가 負

擔金を 納付期間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日 이상의 期限을 定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滯納된 負擔金에 대하여 100分의 5에 相當하는 加算金を 賦課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限 내에 負擔金を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汚染防止事業團이 施行者인 경우에는 미리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全改 86.12.31>

### 第 7 章 防止施設業

**第47條** 【防止施設業의 登錄】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그 종류별로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資本金・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 중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중요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全改 86.12.31>

**第48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86.12.31>

1. 禁治産者, 限定治産者<新設 86.12.31>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防止施設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 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 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新設 86.12.31>

**第49條** 【登錄의 取消 등】 ①環境廳長은 防止施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

나 6月 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년에 2回 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 후 1年 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 이상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
7. 登錄된 종류외의 防止施設業을 행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環境廳長은 法人인 防止施設業者에 대하여 第48條第5號에 해당하는 사유로 登錄取消을 하는 경우에는 任員改任에 필요한 6月이상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全改 86.12.31>

第49條의2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防止施設業者의 繼續工事] ①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 전에 締結한 都給契約에 한하여 그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廳長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指定하여 工事を 管理·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계속하는 者는 당해 設計 또는 施工을 完了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防止施設業者로 본다.

<本條新設 81.12.31>

## 第8章 削 除<86.12.31>

第49條의3~第52條의3 削除<86.12.31>

## 第9章 紛爭調停 및 被害賠償

第53條 [紛爭의 調停申請] ①環境汚染으로 인하여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當事者는 市·道知事에게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申請을 받은 市·道知事는 그 申請內容이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調停委員會의 管轄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調停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10日내에 申請書를 環境廳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調停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4條 [調停委員會] ①環境汚染으로 인한 紛爭을 調停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廳長所屬下에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이하 “中央調停委員會”라 한다)를 市·道知事所屬下에 地方環境紛爭調停委員會(이하 “地方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會의 委員은 15人 이상 20人 이하로 하되 公益을 代表하는 者와 産業 또는 公衆保健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중에서 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가 任命 또는 委囑한다.

③調停委員會의 構成·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5條 [調停委員會의 機能] ①中央調停委員會는 2 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紛爭과 地方調停委員會에서 스스로 調停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決定하여 移送된 紛爭을 調停한다.

②地方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調停委員會의 管轄에 속하지 아니하는 紛爭을 調停한다.

**第56條** 【調査委員の指名】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は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申請이 있을 때에는 調停委員 중에서 5인 이내의 調査委員을 指名하여야 한다.

**第57條** 【事實調査 등】 ① 관계當事者 間의 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當事者 또는 參考人에 대하여 출석하여 陳述할 것을 要求하거나 관계 書類를 閱覽 또는 公務所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거나 관계 事業場에 出入하여 調査할 수 있다.

② 調査委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58條** 【調停委員의 義務】 ① 調停委員은 紛爭의 實情을 詳細하게 調査하고 公正하게 調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調停委員은 紛爭調停 중에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9條** 【調停效力】 ① 調停委員會는 紛爭의 調停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90日 내에 調停案을 作成하여 當事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에 대하여 當事者가 이를 受諾한 때에는 調停委員全員은 調停調書를 作成하고 當事者와 함께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調書는 民事訴訟法 第206條의 規定에 의한 和解調書의 效力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第60條** 【生命・身體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 事業場 등에서 발생되는 汚染物質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事業者는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事業場 등이 2個 이상 있을 경우에 어느 事業場 등에서 排出된 汚染物質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各 事業者는 連帶하여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害의 賠償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民法이외의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그 規定에 의한다.

## 第10章 補 則

**第60條의2** 【關係機關의 協調】 環境廳長은 이 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할 것을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害蟲驅除方法의 改善
2. 保安林의 指定
3. 禁獵區의 設定
4. 狩獵의 規制 및 團束
5. 農藥의 사용 規制
6. 農業用水의 사용 規制
7. 工業整備 特別區域의 指定
8. 燃料의 品質改善 또는 代替
9. 暖機器의 改善
10. 自動車燃料의 代替
11. 綠地地域・風致地區 및 空地地區의 指定
12. 下水處理場의 設置
13. 公共水域의 浚渫
14. 都市開發制限區域의 指定
15. 産業施設 設置로 毀損된 國土의 原狀復舊
16. 道路, 鐵道設置時 切開地의 整備
17. 河川占用許可의 取消, 河川工事의 施行中止・變更 또는 그 工作物 등의 移動이나 除去
18. 公有水面 占用 및 사용許可의 取消, 公有水面 사용의 禁止・制限 또는 施設物 등의 改善・除去
19. 老朽車輛의 엔진의 變更 또는 代替
20. 洗劑의 代替
21.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本條新設 79. 12. 28〉

**第60條의3** [檢査用機械·器具의 型式承認 등] ①自動車的 排出가스, 騒音 등에 관한 檢査用 및 整備用 機械·器具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型式에 關하여 環境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型式承認을 받은 者가 그 機械·器具를 製作 또는 輸入한 때에는 確認檢査를 받아야 하며, 確認檢査를 받은 機械·器具를 사용하는 者는 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第2項의 確認檢査 및 精度檢査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廳長이 定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檢査 또는 精度檢査를 받지 아니한 機械·器具는 이를 販賣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79.12.28>

**第61條** [環境保全協會] ①環境保全에 關한 調查研究·技術開發·啓蒙事業 등을 하기 위하여 環境保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組織·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61條의2** [環境要員의 教育訓練] 大統領令이 定하는 環境保全 關聯事業 및 施設運營에 종사하는 技術要員(이하 이 條에서 “環境要員”이라 한다)을 雇傭한 者는 소속 環境要員에 대하여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이 지정하는 時期와 訓練機關에서 실시하는 訓練을 받게 하여야 한다.

<全改 86.12.31>

**第62條** [國庫補助] 政府는 다음 各號의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

1.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을 위한 事業에 所要되는 經費
2.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協會 및 環境研究機關의 調查·研究·技術開發 및 啓蒙事業 등에 所要되는 經費

3. 事業者가 防止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한 資金에 대한 利子<新設 81.12.31>

**第62條의2** [環境汚染防止基金] ①環境汚染防止事業과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의 救濟 및 事業者의 防止施設投資에 대한 長期低利融資를 위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環境汚染防止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第19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
2. 政府 및 政府 이외의 者의 出捐金
3.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受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收入金

③基金은 第62條의 3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環境汚染防止事業團이 이를 管理·運用한다.

<本條新設 81.12.31>

**第62條의3** [環境汚染防止事業團] ①環境汚染防止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環境汚染防止事業團을 設立한다.

②環境汚染防止事業團은 法人으로 한다.

③環境汚染防止事業團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하여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本條新設 81.12.31>

**第62條의4** [聽問] 環境廳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
2. 第22條의2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

〈本條新設 86. 12. 31〉

**第63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環境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 市·道知事 또는 環境測定管理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81. 12. 31〉

〈全改 79. 12. 28〉

**第64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登錄 등을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檢査
3. 第22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測定行者의 지정
4.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全改 86. 12. 31〉

**第65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章 罰 則

**第6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1. 12. 31, 86. 12. 31〉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여 操業을 하거나 第16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者
2.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결과 適合判定을 받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3. 第18條의 命令에 違反한 者
4.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

命令을 違反하여 操業을 계속한 者

5. 第21條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操業을 계속한 者

6. 第30條第1項 또는 第32條의 4의 規定에 違反하여 自動車를 製作하거나 輸入한 者

**第6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6. 12. 31〉

1.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者
2. 削除〈86. 12. 31〉
3.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施工을 한 者
4. 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削除〈86. 12. 31〉

**第6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2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家測定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的 필요한 요청을 거부한 者
3. 第26條의 2第3項·第27條·第27條의 2 第2項·第30條第4項·第31條第1項·第34條의 2·第35條第2項·第37條第2項 또는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同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自動車燃料用添加劑를 製造輸入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自動車燃料를 製造한 者
5. 第32條·第37條第1項 또는 第60條의 3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32條의 2 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騒音規制基準에 위반한 者



<全改 86. 12. 31>

**第69條** 【罰則】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의2 第2項·第9條의2 第5項·第22條의2 第4項 또는 第60條의3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6條의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한 者
4.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檢査結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5. 過失 또는 業務上的 過失로 인하여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42條의3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全改 86. 12. 31>

**第69條의2** 【過怠料의 賦課·徵收 등】

①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

1. 第15條第2項·第23條第1項 또는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家測定記錄을 비치하지 아니한 者
3. 第23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24條第1項·第30條第2項·第31條第3項 또는 第42條의3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關係公務員의 확인·調査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者
5. 第26條의2 第1項 또는 第61條의 2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環境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改 86. 12. 31>

**第7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第66條 내지 第69條의 規定에 違反하는 罪를 犯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에 處한다.

###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78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이 법 施行과 동시에 公害防止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이 법 施行 당시 公害防止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에게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第4條** 省略

附 則 中略

附 則(1986. 12. 31)

이 법은 1987年 4月 1일부터 施行한다.